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가단2401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도연

피 고 B

변론 종결 2021. 3. 16.

판결 선고 2021. 4.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2. 2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합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8. 28. 접수 제1925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 제출 당시에는 청구취지 본문에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 대신에 그 첨부 별지 목록에 소외인의 지분을 표시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며 종전 별지 목록의 수정은 누락한 채 변경된 청구취지 본문에 소외인의 변경된 지분을 표시하고 있는 바, 청구취지 변경의 취지를 선해하여 종전 소장에 첨부된 별지 목록 기재 지분 표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를 수정하여 본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시번호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소외인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2.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합의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8. 28. 접수 제1925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하고 간병한 사정, 소외인이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 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사업을 투자하였던 사정, 그밖에 망 E의 유언과 자녀들의 뜻에 따라 망 E 사망 후 피고의 거주 용도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합의에 이른 것일 뿐이므로 선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그런데, 이러한 법률에 따른 악의 의 추정이 반복되어 피고를 선의로 인정하기 위한 피고의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 피고를 선의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피고의 기여분, 소외인의 특별수익 등에 따라 구체적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 소외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원고 주장과 같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회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금천구 F에 있는 G건물 제4층 H호

(1동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F에 있는 G건물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I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연립주택)

지1층 841.88㎡

1층 400.51㎡

2층 309.01㎡

3층 내지 5층 515.15㎡

6층 507.21㎡

옥탑 1층 45.3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F 대 1386.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H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8.5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386.6분의 37.71

소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23.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 라고 합니다)와 여신한도 8억 원, 여신만료일 2012. 12. 21.로 하는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C는 위 대출채무에 대해 근보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J와 2014. 8. 8. 3억1,000만 원, 2016. 1. 22. 3억7,000만 원, 2016. 5. 12. 3억8,600만 원, 2016. 8. 8. 2억7,000만 원의 각 대출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소외 C는 위 각 대출계약에 대해서 근보증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각 대출거래 약정서 및 근보증서).

소외 C는 2016. 9. 20. 위 각 대출계약상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소외 C의 부 망 E은 서울시 금천구 F에 있는 G건물 4층 H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합니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E이 사망하자 피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8. 28. 접수 제192587호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갑제 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 성립

원고는 2020. 4. 16. 기준 소외 C에게 약 9억7,000만 원의 대출금 채권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성립하였습니다.

나. 소외 C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소외 C는 원고에게 위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소유 재산은 이 사건 건물이 유일한바¹⁾,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되었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 되었고²⁾,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소외 C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한 바,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2. 22.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피고의 악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따라서 소외 C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악의 역시 인정된다

1) 필요시 추후 소송과정에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필요시 추후 소송과정에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소외 C와 피고가 모자관계임을 고려하면 피고의 악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원상회복

소외 C의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어떠한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원물반환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결어

위 검토한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고,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 포함 다수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이 분명하며, 소외 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원고는 귀 원의 2020. 1. 15.자 보정명령을 받고 소외 망 E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본 결과, 소외 망 E의 상속인으로 피고와 소외 C 이외에도 망 E의 자녀인 소외 K, L, M(이상 소외 C의 형제자매)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는 3/11, 소외 K, L, M, C는 각 2/11씩 상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C에게 그 상속지분인 2/11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